[별표9] 금융투자상품거래를 위한 표준투자권유준칙 <신설 2020.2.28>

제1편 총 칙

제1조(목 적)

①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은행의 임직원과 은행으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 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일반투자자인 고객(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법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2.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은행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가. 투자권유희망고객 : 투자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1) 정보제공고객 : 별지 제1호의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이하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 호의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용)”(이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 작성·제출한 일반투자자

(2) 정보미제공 고객 : 은행이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일반투자자

나. 투자권유불원고객 : 투자권유를 필요로하지않으며,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하여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4. “시스템매매”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고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도 시스템매매로 본다.

5. “온라인 증권거래”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컴퓨터 등 유·무선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6. “포트폴리오 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7. “파생상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나. 파생결합증권(단, 금적립 계좌 등은 제외)

다. 파생상품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단,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에 따른 인덱스펀드는 제외되나,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파생상품등에 해당)

라.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나목의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마.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단, 집합투자재산의 50%이하로 나목의 파생결합증권(단서제외)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나목의 단서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만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파생상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 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은행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④ 은행은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고객의 투자성향 분류)

① 임직원 등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해당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별지 제2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인 경우 3단계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인 경우 2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석결과를 해당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7조(투자권유를 받지 않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 제2항(투자자정보 파악)및 제3항(적합성원칙)에 따른 의무를 은행이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만일, 파생상품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에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④ ③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 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가)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나)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8조(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 원칙])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①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1조(투자권유절차)부터 제14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까지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제4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장 투자자정보

제9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①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3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⑤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

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⑥ 임직원 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⑦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2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펀드를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시스템, 홈트레이딩 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에서 제시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제 19-3-1조(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참조]

제10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투자자정보를 ‘투자자 기본 투자성향’과 ‘금번 투자자금성격’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투자자기본 투자성향’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설정함.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①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은행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확인하고 ,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①부터 ③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10-2조(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방법)

투자자정보는 반드시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직원이 면담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투자자에게 확인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제2장 투자권유

제11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 등은 은행이 정한 별표1호 적합성판단 방식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별표 2호 참조)

② 임직원 등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를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1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⑤ 임직원 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대상상품 가입경험이 없는) 개인 및 법인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

나)대상상품 : ELS·ELF·ELT, DLS·DLF·DLT

제12조(계열회사 등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①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 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

하여야 한다.

'유사한 펀드' 란 아래 기준에 따른 펀드를 말한다.

1.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 등의 펀드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에 따른 위험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것
2.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 등의 펀드와 같은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펀드일 것.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종류일 경우 회사가 같은 종류의 펀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음

   *1 및 2의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 중에서 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지역(국내·해외) 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하여야 함. 다만, 해당 펀드의 향후 전망, 운용 안정성, 판매전략 등을 감안하여 달리 투자권유할 수 있음

②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계열회사 등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가 은행의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지제1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제4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 등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이 경우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11조 ①항에 따른 적합성판단 기준 이외에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4호 참조)

1.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 권유할 수 있다.

   가. 금리스왑

   나. 옵션매수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 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 할 수 있다.

   가. 금리·통화 스왑

   나. 옵션 매수·매도

   다. 선도거래

제15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

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다.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3) 신탁계약

         (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나)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5.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 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관계법령 등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1. 임직원 등이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 권유할 수 있다.

2. 임직원 등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에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임직원 등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투자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자문할 수 있는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 은행은 임직원 등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업자로서 자문하는 경우 투자자의 보유자산 전체가 아닌 해당 투자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금액만을 기준으로 적합성 판단을 하고,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도·추가매수 또는 자산가치 변동 등으로 포트폴리오 가중평균위험이 변동되면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 비율을 재조정 하도록 안내 또는 확인절차를 두어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제3장 설명의무

제16조(설명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①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임직원 등은 ①항 및 ②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⑤ 임직원 등은 ①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⑦ 임직원 등이 법 제124조에 따라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사용하여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클래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명칭은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

경로•기타 펀드 특성’ 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

-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한 한글로 된 종류 (클래스)명칭

제17조(외화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6조 ①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6조 ①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6조①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3.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4.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5.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17-2조(조건부자분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6조 ①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나.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다.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라.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마.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바. 사채의 순위

제5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8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은행은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 1호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② 은행은 ①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③ 은행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상품 등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한다.

④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 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은행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⑤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위험도 분류는 준법감시부서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은행은 관련기록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6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9조(투자권유창구 등의 표시)

은행은 영업점에 자금입출 등 통상적인 창구와 구분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창구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

①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가 관계법령 및 이 준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은 은행의 인력현황 및 판매건수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동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은행 및 임직원 등은 은행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행은 투자권유 임직원 등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실적(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투자권유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의 준수 및 민원발생 여부 등 판매의 질적 측면을 반영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적합성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②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①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23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 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은행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당한 권유 금지

1.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은행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사 관계 또는 은행이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은행이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이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은행이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9.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은행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은행이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 내용은 ①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①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5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①항 및 ②항의 경우에는 은행이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①항 및 ②항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②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③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5-2조(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의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임직원등은 ①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①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2. 분산투자규정이 없을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①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

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5-3조(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①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대고객 환매조건부매도 설명의무)

①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환매조건부매도를 권유하는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 가입대상, 최소가입금액, 가입기간, 이율 등 상품의 주요내용

2. 환매수 가액 등 환매에 관한 사항

3.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4. 양도 및 질권설정에 관한 사항

5. 약관에 관한 사항

6. 환매조건부매도 대상증권의 종류 및 보관, 종목대체에 관한 사항

② 임직원 등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고객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환매조건부매도 거래의 성립 및 환매수)

① 환매조건부매도는 고객이 거래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을 은행에게 신고하여 계좌를 설정한 후 매수대금을 납입하고 은행은 고객에게 상품설명서 및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고객은 약정 기일에 은행에게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

다.

제28조(환매조건부매도 거래의 통지)

① 은행은 고객과 환매조건부매도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매조건부매도 거래 성립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환매조건부매도 가액
2. 환매수의 약정일자 또는 기한
3. 환매수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환매조건부매도 대상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5. 환매조건부매도 대상증권의 시장 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② 은행은 환매조건부매도 거래 성립 내용을 통장, 매도확인서,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도성립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9조(신탁업계약의 체결)

① 임직원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 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보장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2.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기·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13.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시기

14.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15.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16.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경우 다음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 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지정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 특정금전신탁 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17. 그 밖에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0조(신탁업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임직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9조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법시행령 제10조1항 각 호의 자는 제외)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3.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서면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원본의 보전계약을 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하여는 신탁통장 등에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7편 보칙

제31조(점 검) 은행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집합투자증권 표준판매절차)

① 은행은 집합투자증권 세부 판매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율 하는 집합투자증권 표준판매절차를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임직원 등의 표준판매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당행이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하여 제출 받는 서류입니다.

□ 고객께서 당행으로부터 고객의 투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당행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정보 확인서

대분류	질문항목	
재무적 필요성	1.연령대	①29세 이하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2.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③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연금 등이 주 수입원임
금융투자 상품 및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	3.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중복응답가능)	①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②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F(ELS), ELD 등 ③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F(ELS), 혼합형펀드 등 ④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F(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등 ⑤ELW,선물옵션,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4.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①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②높은 수준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③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④매우 낮은 수준 – 금융상품 중 예·적금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정도
투자 성과에 대한 기대치	5. 감내할 수 있는 손실감수 수준	①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②2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③1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④투자 원금 보전을 추구한다
	6.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가능 기간	① 3년 이상 ②2년 이상 ~ 3년 미만 ③1년 이상 ~ 2년 미만 ④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⑤6개월 이내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투자 펀드에 투자한 경험 파악

① 투자경험 없음 ②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별지 제2호>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용)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은행이 일반투자자인 고객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의 거래(투자)목적, 재산 상황 및 거래(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정보는 고객의 투자(거래) 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거래) 경험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적합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또한 일반투자자인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고객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고객으로부터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정확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우리은행은 고객님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필수기재사항>

정보제공 여부	예 □	아니오 □	기존정보와 동일 □
투자권유 희망여부	예 □	아니오 □	
고객유형	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	개인사업자 □

I. 고객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 외화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외화부채 총계 :

연간 수출총액 : 연간 수입총액 :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고객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	□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	□	□	□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	상 :	중 :	하 :

도	(전문가 수준)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3. 고객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요 :		
4. 고객님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고객님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	아니요 :		

※ 고객이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당행과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 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명)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고객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KIKO 등				
이자율 스왑(Interest Rate Swap)				
구조화 이자율 스왑(Exotic Interest Rate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본 정보제공에 대한 분석결과는 제공하신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본 서류에 제공한 정보는 투자조언 내지는 투자권유 등의 근거자료로 만 사용할 것입니다.	분 석 결 과

고객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본인이 우리은행과 하려는 장외 파생상품거래는 본인의 거래 목적, 기타 모든 면에서 적합한 거래임과 우리은행이 이 확인서 사본을 본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___년 __월 ___일

(직위) _____(담당자) _____(인/서명)

(법인명) _____

우리은행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우리은행이 고객과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___년 __월 ___일

(우리은행 지점/부서명) _____(담당자) _____(인/서명)

※ 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본 은행에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작성하는 양식이며, 만약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본 은행은 투자자로부터 투자자확인(부적정 파생상품 등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객이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이 조사표 사본에 우리은행이 기명 날인을 한 후 이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기명 날인(서명)한 이 조사표 원본은 우리은행이 보관합니다.

<별지 제3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 문항별 배점

투자자정보 확인항목	세부 항목	배점
※ 자동 전산처리 항목 0. 고객 연령 *법인의 경우 생략	29세 이하	2.5점
	30세 ~ 39세	2.0점
	40세 ~ 49세	1.5점
	50세 ~ 59세	1.0점
	60세 이상	0.5점
1. 수입원	현재 일정한 수입 있으며, 현재 수준 유지(증가) 예상	5.5점
	현재 일정한 수입 있으나 향후 감소 또는 불안정 예상	3.5점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음	1.0점
2. 투자경험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1.0점
	금융채, 채권형 펀드, 신용도 높은 회사채, 원금보존추구형 ELF 등	2.5점
	혼합형 펀드, 신용도 중간 등급 회사채, 원금일부보장 ELF 등	3.5점
	시장수익률 추구 주식형 펀드, 신용도 낮은 회사채, 원금비보장 ELF 등	4.5점
	시장수익률 이상 추구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펀드, ELW, 선물옵션 등	5.5점
3.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매우 높은 수준	5.5점
	높은 수준	4.0점
	낮은 수준	2.5점
	매우 낮은 수준	1.0점

4. 손실 감내도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도는 상관하지 않음	10점
	20% 미만까지 손실 감수	7.5점
	10% 미만까지 손실 감수	5.0점
	반드시 원금 보전	2.0점
5. 투자가능 기간	3년 이상	2.5점
	2년 이상 ~ 3년 미만	2.0점
	1년 이상 ~ 2년 미만	1.5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0점
	6개월 미만	0.5점

□ 점수 계산 방법

- 0번부터 5번까지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1.5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0번부터 5번까지의 합이 26점인 경우, 26점/31.5점 × 100 = 82.5점

□ 등급 부여

- 점수 계산 결과에 따라 1등급 ~ 5등급 중 부여

.43점 이하: 안정형 .43점 초과 ~ 55점 이하: 안정추구형

.55점 초과 ~ 68점 이하: 위험중립형 .68점 초과 ~ 81점 이하: 적극투자형

.81점 초과: 공격투자형

<별지 제4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1.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①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②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③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2. 고령투자자의 정의

① 회사는 만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만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②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한다.

③ 계좌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와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②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③"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1)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을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관리직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 필요

-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여부(ex. 근황 문의)
- 투자자금의 성격(ex. 생계자금 해당여부)
-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ex. 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
-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ex. 말투, 기억수준 등 고려)

4)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①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1)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한다.

2)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③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④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①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제

1)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2)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② 조력자와의 상담 또는 관리책임자 동석(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1)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사후모니터링 강화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지 제5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1. 로보 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드리는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고객님의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을 드리는 목적이며, 고객님의 실제 투자성향보다 고위험등급의 상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우리 로보 알파 자산관리 서비스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는 못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 또는 해지 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따라 환매 또는 해지를 통한 투자금의 중도인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3.투자자의 성향분석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본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였습니다.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테스트베드 :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별표 1>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금융투자상품은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적합하게 분류

<집합투자증권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

집합투자증권 판매시자산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6단계 투자위험등급을 준용하여 투자자의 성향별로 적합한 상품을 권유한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지도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고객성향등급	공격투자형(1등급)		적극투자형(2등급)	위험중립형(3등급)	안정추구형(4등급)	안정형(5등급)
펀드	구조화 상품, 특별자산 등	고위험자산 80% 이상	고위험자산 80% 미만	고위험자산 50% 미만 중위험자산 60% 이상	저위험자산 60% 이상	MMF 단기 국공채
파생결합증권	최대손실률 20%초과		최대손실률 20% 이하		원금보존추구형	
수익률 변동성 기준 (설정 후 3년경과)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특정금전신탁	회사채(B이하)	회사채(BB^+ ~ BB^-)	회사채(BBB^+ ~ BBB^-)	회사채(AA ~ A^-)	금융채(은행채 제외) 회사채(AA^+이상)	국고채,통안채,지방채 보증채,은행채,특수채
	기업어음(C이하)	기업어음(B^+ ~ B^-)	기업어음($A3^+$ ~ $A3^-$)	기업어음($A2^+$ ~ $A2^-$)	기업어음(A1이상)	발행어음 (은행/증권금융발행)
	파생결합증권 (최대손실률 20% 초과)		파생결합증권 (최대손실률 20% 이하)		파생결합사채 (원금보존추구형)	은행예적금, 은행발행CD, RP,콜론,자사주
	선물 · 옵션	주식				

장외파생상품 위험등급	고위험(Ⅲ단계)	중위험(Ⅱ단계)	저위험(Ⅰ단계)
장외파생상품	레인지포워드, 인핸스드포워드 기타 저 · 중위험에 속하지 않는 상품	통화선도, 통화스왑	이자율스왑, 옵션매수(고객입장)

주) 1. 고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수익률 변동성 : 해당 펀드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 동안의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를 연환산하여 산출

* 펀드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6단계로 분류했으며 개별상품별로 위험등급은 위의 분류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장외파생상품 매매 시 투자자 위험등급 분류기준 >

분류	A 등급	B 등급	C 등급
개인	-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자	-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이고 3년 미만인 자 -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자	- 기타 개인 고객
법인 및 개인사업자	해당사항 없음	- 개인사업자 - 비상장법인이면서 파생상품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자 - 주권상장법인이면서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자	- 기타 법인 고객 - B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위험관리능력, 금융거래경험, 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C등급으로 분류한 자

< 장외파생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기타	통화선도	이자율 스왑, 옵션매수

< 신탁 상품(운용자산)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 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 위험)
특정금전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금융채	국고채, 통안채,

신탁	(B이하)	(BB+~BB-)	(BBB+~BBB-)	(AA~A-)	(은행채 제외) 회사채 (AA+이상)	지방채, 보증채, 은행채, 특수채
	기업어음 (C이하)	기업어음(B+~B-)	기업어음 (A3+~A3-)	기업어음 (A2+~A2-)	기업어음 (A1이상)	발행어음 (은행/증권 금융발행)
	파생결합 증권 (최대 손실률 20%초과)		파생결합 증권 (최대 손실률 20%이하)		파생결합 사채 (원금보존 추구형)	은행예적금, 은행발행CD, RP, 콜론, 자사주
	선물·옵션	주식				

<별표 2>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고객성향등급	공격투자형(1등급)		적극투자형 (2등급)	위험중립형 (3등급)	안정추구형 (4등급)	안정형 (5등급)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 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 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 위험)
펀 드	구조화 상품, 특별자산 등	고위험자산 80% 이상	고위험자산 80% 미만	고위험자산 50%미만 중위험자산 60%이상	저위험자산 60%이상	MMF 단기 국공채
파생결합증권	최대손실률 20%초과		최대손실률 20%이하		원금보존추구형	
수익률 변동성 기준 (설정 후 3년경과)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구분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상품등급	장외파생상품(3등급 분류)

투자자유형	개인고객	법인 및 개인사업자
A등급	저위험	-
B등급	저위험, 중위험	저위험, 중위험
C등급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별표 3>적합성 판단 방식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등) : 삭제

<별표 4>적합성 판단 방식 (장외파생상품)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장외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th></tr>
<tr><th>1년 미만</th><th>1년이상 ~ 3년 미만</th><th>3년 이상</th></tr>
<tr><td rowspan="2">개인</td><td>만 65세 이상</td><td>금리스왑
옵션매수</td><td>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td><td>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td></tr>
<tr><td>만 65세 미만</td><td>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td><td colspan="2">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td></tr>
<tr><td rowspan="2">법인 및 개인 사업자</td><td>주권 비상장기업, 개인사업자</td><td colspan="2">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td><td>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td></tr>
<tr><td>주권상장법인</td><td>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td><td colspan="2">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td></tr>
</table>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 상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예시

가.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나.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다. 위험 : 가,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는 투자자성향 분류 단계 및 실제 투자자성향 분포를 감안하여 분류하며,

시장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경고’ 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3

단

<표 5>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